

의안번호	2202590
의 퇴 인	강선영의원
회 답 일	2024. 08. 22.
추 계 번호	24D218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급여액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1,700만원, 2030년 1억 2,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 900만원(연평균 1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을 급여액 산정 시 반영 (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117	119	122	124	127	609	122

주: 1.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을 급여액 산정 시 반영(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매년 29명(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여 동법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 시 특별승진을 반영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3. 순직공무원의 유족연금 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로 동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급여액 산정의 기초)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급여액 산정의 기초)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사망한 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증액되는 급여는 퇴직수당이고 특별승진 반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증가율은 공무원 봉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 순직공무원의 연금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하므로 동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비공무상 재해보상급여는 일반적으로 특별승진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기준소득월액에는 봉급¹⁾과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8개 수당 또한 직급과 봉급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증가율을 공무원 봉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개인별 과세소득액 - 개인별 8개 수당 지급액 + 직종·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 보수상승률)
 - 8개 수당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말함
 - 본 추계에서는 순직공무원 중 특별승진한 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개

1) 이때, 봉급은 공무원 봉급표 상의 금액을 말하며 보수월액(={봉급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월)과 다름

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구성하고 있는 봉급, 수당 등 항목에 구분 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²⁾

-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직종은 경찰 및 소방직의 비율이 높아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하여 경찰 및 소방직 순직자의 인원, 유족 평균 연령 등을 활용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하는 공무원이 매년 29명(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총 145명으로 연평균 29명
 - 다만,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차이가 있어 본 추계에서는 순직자와 위험직무순직자를 구분하여 추계하며 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으로 가정
 - －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 중 위험직무순직자 비율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활용하면 24%³⁾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위험직무 포함)의 퇴직수당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2)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봉급과 수당 등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을 반영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봉급(공무원 봉급표 기준)만 증가하고, 8개 수당 평균액은 1년 후에 결정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특별승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 기 확정된 전년도 상위직급의 8개 수당 평균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8개 수당 평균액도 봉급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3)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총 96명이고, 이 중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은 23명으로 24%(=23명÷96명)의 비율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순직공무원(위험직무 포함)이 매년 29명이 발생하고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기준소득월액이 현행보다 6.8%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대상자 수)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매년 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증가액) 특별승진을 반영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6년 기준 1인당 증가액은 순직공무원 422만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340만원
 - 퇴직수당산식: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별 지급비율⁵⁾
 -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보수 평균 상승률 1.9%에 따라 증가하며 2026년 기준 620만원, 500만원으로 추정
 - 추정된 기준소득월액, 평균 재직년수(순직 26년, 위험직무순직 27년), 지급비율(39%)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산출한 후, 특별승진을 적용하여 6.8% 증액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 개정안에 따른 퇴직수당과의 차액을 산출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급여액(퇴직수당)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반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1,700만원, 2030년 1억 2,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특별승진을 반영한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 비용: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수 (A, 명)	순직	22	22	22	22	22	—
	위험직무순직	7	7	7	7	7	—
증가액 (B, 만원)	순직	422	430	439	448	458	—
	위험직무순직	340	347	354	361	366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117	119	122	124	127	609

4)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가정하면, 28세에 입직하여 53세까지 3번 승진 후 순직하는 경우 경위/소방위 25호봉으로 추정되며 특별승진하는 경우 경감/소방경 24호봉으로 봉급이 6.8% 상승

5) 재직년수 20년 이상의 퇴직수당 지급비율은 39%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이 매년 2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